

2024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1. 23.(화) 14:00~15:15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강동진, 김상남, 김종현,
나창순, 목수현,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한경순(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현상변경(2차, 재심의)	(공 개)
2	사적 「환구단」 현상변경(2차)	(공 개)
3	국가등록문화재 「원주 구 반곡역사」 현상변경	(공 개)
4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보고사항】

5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통합안) 보고	(공 개)
---	--	-------

심 의 사 항

1.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현상변경(2차, 재심의)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 등록구역 일부 철거 및 외관을 변경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 6. 27.) : **부결**
 -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 훼손이 우려됨
 - '23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 10. 24.)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조정 후 재심의
 - '23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23. 11. 9.) : **조건부 가결**
 - 구조 보강 방법의 당위성에 대한 상세 설명 필요
 - 증축 입면(3층) 마감 통일성 유지
 - 학예연구실 증축부 재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현대미술관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02.5.31. 등록)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해당 문화유산
 - 신청내용 : 일부 철거 및 외관 변경
 - 일부 철거
 - 1960년 이후 증축된 건축물 철거
 - 1932년 건립 구역 건축물 일부 철거
 - 외관 변경
 - 외벽면에 접하여 건축물 수평증축
 - 3층부 전체 철거 후 건축물 수직증축(디자인 동일, 지붕재료 변경)

- 좌·우측 연결통로 철거 후 실내연못 및 성큰(sunken) 조성
- 형태 변형된 창호 교체 등 입면 복원
- 기타
 - 내진보강: 전단벽 설치, 마이크로 파일 설치 등
 - 지하층 설치를 위한 흙막이 공사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6.16.):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제18호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단순 지방 행정업무시설이 아닌, 대전을 비롯한 충남지역 행정적 기능에 확장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내재된 문화유산임
- 충청남도청 구 본관은 해방 이후에도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 왔으며, 점차 확대되는 충남도 행정업무를 위해 현재 3층 부분이 계획되면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대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알려진 현재의 문화재 경관과 이미지는 지역사회에서 상징성과 장소성, 시대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되고 있음
- 구 본관의 3층은 1960년 증축공사로 현재 모습이 갖춰진 것으로, 금번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계획안에서 제시된 문화재 원형 복원 및 미래를 지향하는 이미지 구현을 위해 증축부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제안은 문화재가 갖는 역사적·건축적 의미에 연속선상에서 볼 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제시된 계획안이 실현될 경우 문화재 등록 부분이 아니어도 문화재 위에 직접 연결되는 수직 증축부의 파사드에 의한 형태적 변형은 기존 문화재 입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문화재 경관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커질 것이 우려됨. 따라서 문화재의 파사드 변형을 최소화하고, 옛 충남도청사의 지역성 및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구조적 측면에서 3층에 적용되는 구조보강 방안은 구 충남도청사의 기존 내부공간에 간섭을 수반하는 보강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문화재의 배면(중정부) 출입구 주변에 수직 동선 확보를 위해 계획되는 증축부분에 지하터파기 시 문화재 변형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구조적 검토와 보강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학예연구실 증축부는 대상문화재와 구별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

- 향후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관계전문가 2명 참여하여 전시계획을 수립할 것
 - 관계전문가: ○○○ 위원, ○○○ 위원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2. 사적 「환구단」 현상변경(2차)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환구단」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환구단」 지정구역 내에서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3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3. 10. 24.) : **부결**
- 문화재 지정구역 내로 문화재 보호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환구단」('67.7.1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 (3) 세부내용
 - 신청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 ※ 문화유산 지정구역 내
 - 세부내용 : 기존계단실에 지하층 연결 엘리베이터 증설
 - 계단실 면적: 35.69㎡ (변경없음)
 - 증축부 규모: 지상 4.3m, 지하 18.75m (5개 층)
 - 지상 노출부 마감 : 기존 강화집합유리 (변경없음)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3.10.20.) : 문화재위원 ○○○·○○○

- 사적 제157호인 환구단(圓丘壇) 주변 숙박시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에 따른 현상변경 건임.
- 기존 주차시설 규모에 비해 이동편의시설에 부족함은 있으나,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 여건 및 경관 등에 변화를 수반할 수 있어 신청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부결 1명

3. 국가등록문화재 「원주 구 반곡역사」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원주 구 반곡역사」에서 영화 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원주 구 반곡역사」에서 영화 촬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원주 구 반곡역사」('05.4.15. 등록)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4-2번지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54-2번지
 - ※ 당해 문화재
 - 신청내용 : 영화 촬영에 따른 외관 변경
 - 창호공사: 기존 반곡역사 창틀 및 창호 위 촬영용 창틀 소품 부착
 - 도장공사: 승강장 출입문 및 외벽 도색
 - 기타공사: 가벽설치, 간판 교체 등
 - ※ 영화 촬영 종료 후 복구 예정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4.1.19.) : 문화재위원 ○○○

- 반곡역사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함. 다만, 촬영을 위해 간판 등을 떼어내고 다시 붙일 때 가급적 손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가장 큰 문제는 반곡역 하부의 페인트 도색인데 현재상태를 면밀히 기록하여 촬영 후 현재의 색상에 맞추어 다시 도색을 할 것. 현재는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많고 곰팡이 등이 있어서 도색이 필요한 상황임.
- 주변시설들 촬영을 위해 크로마를 설치할 예정인 바 문화재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요망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영화 촬영 종료 후, 도색 등 원형 복구할 것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4. 「디젤난방차 905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 소장 「디젤난방차 905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3.11.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디젤난방차 905호」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철도공사 철도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 명칭 : 디젤난방차 905호
 -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 소재지 : 철도박물관(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 수량 : 1량
 - 제작연대 : 1964년
 - 규격 : 길이 13,000mm / 높이 3,737mm / 폭 3,000mm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3.31.) : 문화재 등록신청(경기도→문화재청)
 - ('23.8.31./9.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 ('23.11.28.) :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등록 검토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3. 12. 14. ~ '24. 1. 11.(30일간) *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8.31.)
 - 본 유물은 1964년 인천공작장에서 제작한 디젤난방차 10량 가운데 하나로, 1987년까지 운행됨. 근현대기 철도교통 난방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차량이며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디젤 난방차량임. 그러나 다수의 근대기 철도 차량이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상황에서, 이 디젤난방 차량이 특별

한 위상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철도난방 시스템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대기 철도사의 흐름에서 보면 대표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국가등록문화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됨

○ ○○○○○○○○○○○ ○○○ ○○○(’23.8.31.)

- 열차의 전기난방시스템으로 전환되기 전의 증기난방시스템 전용 차량으로 약 23년간 한 시대의 열차난방시스템을 담당한 상징물로서 가치가 있음. 난방차의 증기발생 방식은 기술적으로 일반 건물 보일러보다 시대에 앞선 것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 ○○ ○○○(’23.9.12.)

- 일반 열차 이용객의 시점에서 철도 여행의 모습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어 생활문화사 측면의 가치가 있으며, 철도사의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난방차’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보고사항

5.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9개소 통합안) 조정 보고

가. 보고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및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등 9개소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한 조정(통합안)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허용기준의 공통사항 재검토를 중심으로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보존정책과 주관) 결과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강화산성 및 강화 고려궁지와 시도지정 문화재 용흥궁 등 9개소의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 '01.01.04. 지정), 강화산성(사적 / '64.06.10. 지정), 강화 고려궁지(사적 / '64.06.10. 지정), 용흥궁(시유형문화재 / '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동헌(시유형문화재 / '95.03.02. 지정), 강화유수부 이방청(시유형문화재 / '95.03.02. 지정), 강화 석수문(시유형문화재 / '95.03.02. 지정), 강화향교(시유형문화재 / '95.11.15. 지정), 김상용순절비(시기념물 / '95.11.15.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세부내용 : 허용기준 조정 결과 (문화재청 고시 제2023-164호/2023.12.29.)
 -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통합 고시 (9개소)
 - (용어 변경) ‘개별심의→개별검토’, ‘건축물 최고높이→최고높이’, 공통사항 ‘건축물→건축물 및 시설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
 - (공통사항 조정 신설) 태양에너지 설비 조항,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 도로 교량 등의 신설 및 확장
 - (도면 범례 표기 변경) 2, 3, 4, .. 구역 → 2-1, 2-2, 2-3,

(4) 추진경과

- 주민공람('23.10.18.~'23.11.06.) : 의견 있음(12건 : ○○○ 등 23명)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비닐하우스) 설치 시 개별검토에 대한 제외
- 사적분과위원회 심의('23.12.13.) : '조건부가결'
 - 공통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조정할 것
- 허용기준 조정 고시('23.12.29.) : 공통사항 중 식물 관련시설 설치 제외 반영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

붙임 허용기준 비교표 및 도면

<붙임> 허용기준 비교표 및 도면

○ 허용기준 비교표

변경 전 (2015.05.18. 기고시)			변경 후 (2023.12.29. 통합고시)		
대상 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대상 문화재	강화산성, 강화 고려궁지,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시유형문화재)용흥궁·강화유수부 동헌·강화유수부 이방청·강화석수문·강화향교, (시기념물)김상용 순절비	
	평지붕	경사지붕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 개별 심의 구역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2-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2-5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1m 이하
7구역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 좌동	
공통 사항	○ 관아 추정지역에서 터파기 시 유구 조사를 선행하여야 함.		○ 삭제(법령중복)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반선에서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고시일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신설>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설>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신설>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 도면 비교표(도면 변동없이 구역 표기만 변경)

